



골판지상자제조업 중소기업고유업종 존속의 정당성

Corrugated Cardboard Box

한국지합공업협동조합

최근 골판지 상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건의가 대기업계열군인 제지업체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들 제지업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고유업종이 해제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되는 업태는 일차적으로 골판지원지와 상자를 동시에 제조하여온 업체들이며 뒤이은 큰 파장은 그대로 지합업체를 뒤흔들 것이고 업체 대부분이 소기업에 속해 있는 지합업체는 냉혹한 시장원리에 끌려가는 형편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몇몇 원단을 제조하는 대규모 중기업체들이 골판지상자제조 영역확대를 대비하여 생산라인을 계속해서 신설하고 있어 이러한 위기감은 곧 우리 지합업체의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I. 중소기업고유업종이란?

1979년부터 23개 품목으로 시작하여 1983년에 237개를 정점으로 현재 해제 예시된 43개 업종을 포함 88개 업종이 지정되어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과거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한 산업불균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하

고 중소기업의 정책지원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고유업종기업형, 전문계열화형, 대기업화형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궁극적으로 대기업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꾀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업종참여와 확장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고유업종에 지정되어있는 우리 지합

[표 1] 고유업종제도의 법률적 근거

헌법 123조

제3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제5항 :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노력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9조(정부의 시책) : 정부는 이 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영역의 보호)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용

▶ 지정계열화업종 지정

업계의 주력생산품인 골판지상자는 중소기업법에 의해 골판지생산업체중에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 자본금이 80억원이 넘는 업체는 골판지지원자를 생산하고 있더라도 골판지상자 제조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2. 제지업계의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고유업종 해제건의에 따른 문제점

골판지상자의 고유업종이 해지될 경우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그간 제지업계가 골판지업계에 공급하여온 원지의 공급조절을 통한 골판지 시장의 장악이다.

이는 최근의 원지가격파동을 보면 쉽게 예상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지업계는 펠프 등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원지공급을 감소시켜 자연스럽게 원지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공급을 통한 시장장악에 주력해왔다.

따라서 만일 고유업종이 해제되어 제지업계가 골판지상자라인을 증설 생산할 경우 제지업계는 원지의 공급조절을 통해서나 또는 원지를 이중가격으로 공급하여 중소지함업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유업제 해제시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면

2-1.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고유업종제도는 지금까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남용을 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고유업종 해제 시 그동안 법적 제한을 받아온 대기업의 계열화, 골판지 제조 공자의 생산설비(전체점유율 25%) 확장 및 대기업에서 수요로 하는 품목으로써 자사 그룹의 수요를 독점함에 따라 전체 업체수의 89.7%와 매출 규모에서 57%를 차지하고 있는 1,401개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휴·폐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2-2. 과다설비에 의한 국가적 손실

골판지상자제조업은 상자수요가 많은 경공업 구조에서 중화학 및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상자수요의 양적 성장 둔화와 기계 설비의 자동화 고속화 추세에 따른 과잉설비, 공급과잉 등의 요인으로 기업 간에 경쟁이 치열한 실정으로 이미 공급이 포화상태임에도 고유업종 해제시 기존 대기업의 신규 설비확충 및 시장참여에 의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손실임이 분명하다.

2-3. 지역경제난 및 물류비 손실

골판지상자제조업은 부피산업으로 대부분 소

[표 2] 관련업종 기업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명)

업종별	업체수			매출액	종업원수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계			
골판지용 원지 제조	1	26	27	839,800	2,884	수출용과 지관 및 일반제품 일부포함
골판지 제조	5	129	134	529,010	6,954	골판지 원단 판매분만 적용
골판지상자제조	.	1,401	1,401	1,795,411	13,564	골판지 제조업체의 일괄 골판지상자 생산분 포함
계	6	1,566	1,562	3,164,221	28,402	



(표 3) 대기업의 계열화 골판지 제조공장 현황

(단위: 억원, 명)

대기업군	계열화 골판지제조공장	매출액 (추정)	종업원수 (추정)	점유비 (%)	비고
롯데그룹(주)	포장사업부	600	169	2.6	골판지상자 전체 매출액 (23,149억원)
(주)농심	율촌인쇄(주)	700	240	3.0	
삼성그룹	제일산업	660	280	2.4	
화승그룹	(주)장천	300	205	1.3	
삼양그룹	삼양판지(주)	250	110	1.1	
한국화약	부평판지(주)	300	155	1.3	
아세아그룹	유진판지(주)	350	150	1.5	
태림포장	태림, 월산, 태성외 6개	1,200	500	5.2	
한국수출포장	3개공장	980	400	4.1	
한국아쿠르트	(주)삼화물산	180	75	0.7	
고려화학(주)	(주)동주	250	95	1.1	
서릉그룹	서릉산업	200	73	0.9	
계		5,840	2,452	25.2	100.0%

비지에서 공급하는 지역분포형 산업으로써 다수의 자동화 설비에 의한 제품생산으로 생산경쟁력과 품질수준이 대기업과의 차이에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전국에 분포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으나, 고유업종해제시 대기업의 한정된 지역에서의 시설확충과 신설 대기업에 의한 사업참여로 자금력과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이용한 면 거리의 소비지까지 제품 공급 시 해당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휴·폐업과 지역경제난 및 물류비의 과다발생으로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4. 대기업의 고유업종해제 요청 당위성에 대한 부당성

2-4-1. 중소기업의 난립 및 부실경영과 대기업 시장참여로 일괄생산에 의한 경쟁력 확보

골판지상자제조업은 물품의 특성상 부피산업으로써 기술적 차별성이 크지 않으며, 수요처의 포장물품에 따라 공급처의 규모별 작업방식이 구분되고 있음으로 규모별 생산업체의 설비가 구분

되어져 있다. 즉 소롯트 다품종일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인 작업방식으로 대체적으로 소규모 생산업체에서 공급되고 대롯트인 경우에는 장치산업으로써 비교적 규모가 큰 생산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각각 규모별 제조기계의 기술적 차이는 거의 없으나 생산속도와 작업성만이 구분되고 있음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참여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규모의 경제가 아닌 시장잠식과 더불어 문어발식 사업확장, 추가설비 가동에 의한 국력손실 및 일정수준의 손익분기를 위한 영업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 아닌 휴·폐업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2-4-2. 지정 존속사유의 변이와 역차별적 조항

산업경제의 변화와 세계화 추세 속에서도 골판지 상자는 부피산업임에 따라 수출입이 타 품목과 차별화 되어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고유업종 필수조건에 합리성이 계속 존속되어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동 업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비교 우위에 있음으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에게 이양하도록 중소기업 이양권과 품목으로 설정한 바가 있고, 일부업체의 역차별적(제지생산) 시장진출은 구매비중 증가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수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3. 중소지함업계의 대응방향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에서는 그동안 고유업종 품목으로 지정 받은 골판지상자를 생산해온 대기업군 제조업체의 침해에 대해 각종 조사활동을 통해 침해사례를 적발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현지 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해당 업체들을 제재해왔고 이후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에 대한 정규 실태보고서를 관련부처에 제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3-1. 고유업종제도 법 집행 강화

조합에서는 2001년 9월 1일부로 골판지에 대한 고유업종 해제로 인해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예상되고 있으며, 골판지제조시 연관 산업으로써 고유업종을 존속유지하고 있는 골판지상자에 대한 제조생산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엄중한 법 집행이 요망되고 있고,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시장 침해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자 등의 참여제한) 제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대기업에서는 적

용기준이 미약하여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현장검증거부 또는 기피하였을 경우 고작 벌금이 500만원으로써 대기업이 법을 준수할 의향이 없다는 것보다는 법 적용이 미약함으로 이를 어감에 따라 동 법의 벌금을 상향조정하여 강력한 법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의 육성의지를 강화시킴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제기틀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이 요망되고 있다.

3-2. 골판지상자 고유업종 존속유지의 필요성

중소기업 공유업종제도의 지정기준을 보면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업종으로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소규모의 자본투자로 생산이 가능한 소량 단품종 단규격 제품으로써 대기업 제품과 비교 품질수준에 손색이 없으며, 수급처가 주로 대기업인 품목으로써 자사그룹의 수요를 독점하거나 중소기업의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한다'로 골판지상자는 지정당위성과 일치되고 있다.

전체 생산업체 규모의 89.7%인 전국 1401개의 골판지상자 제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고유업종해제에 따른 대기업의 시장 진출 시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시장구조가 독과점화되거나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으로부터 수직결합기업의 시장봉쇄행위나 계열기업의 경쟁 중소기업을 축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몰락된다면 사회적 비용손실과 갈등이 야기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ko